# 「코로나19(COVID-19)」관련

#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[6판]

2021. 11. 1.



#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요

※ 6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<u>파란색</u>으로 <u>표시</u>

구 분	종전(1판~5판)					개정(6판)	
	■ 직무교육  - (대상)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'  *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, ②안전관리자, ③보건관리자,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, ⑤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, 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,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- (이수기간 유예) ① '20.2.4.~'21.6.9.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6.9.까지 이수해야 함 ② '21.6.10.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6.30.까지 이수해야 함  ■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- (근로자)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- (관리감독자) '20.9.8.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이수해야 함  ■기타 사항  - 고용노동(지)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6.30.까지 유예  -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-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						
	■ 인원기준	•			■ 인원기준		
	 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100인 미만	100~499인 미만	500인 이상
2.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	■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대면 실시가 불가피 한 경우 소규모 (100인 미만)로	■ 대면 실시가 불가피 한 경우 소규모 (50인 미만)로	■ 워크숍,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		■접종완료자로 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전보건법상 의무J 자서이 없는 경으	
( <b>인원기준 등)</b> * 6판에서 변경된 내용	*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<u>좌석 2₹</u> <u>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m²당</u> <u>1명</u>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						
	■ 기타 사항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2회 이상) ■ 기타 사항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						
3.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	고육 ●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						
4. 시행시기					■ '21.11.1.부터	별도 지침 공고	및 시달 전까지

#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(변경사항 없음)

### □ 직무교육

- (이수기간 유예)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\*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  - \* '21.6.10. 이후 ①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(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)
  - 다만,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,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
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\*이 '22.6.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
### 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- (관리감독자) 사업주가 관리감독자\*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\* '21.6.10.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
  -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,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# □ 기타 사항

○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6.30.까지 유예
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-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

	구분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	일반	▶ 8시간	▶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근로자	일용	▶(일반) 1시간 ▶(건설업) 4시간	-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<b>▶</b>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<b>▶</b>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-	▶ 2시간

#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(일부 개정)

※ 출처: '21.11.1., 「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 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

### □ 공통사항

○ 인원 기준

100인 미만	100~499인 미만	500인 이상
■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	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	■ 원칙적 금지

- \*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<u>좌석 1칸 띄우기</u>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<u>시설</u> 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
- 사업주는 근로자·관리감독자 교육을 **집체교육**으로 하려는 경우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**위탁**하기보다는 **사업장 자체실시**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**감염병 예방**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
  -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)
  -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**자율점검표**(붙임1)를 **활용**하여 매일 **방역 관련 점검**을 자체적으로 실시
-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「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 등에서 규정하는 **방역수칙\***을 **준수** 
  - \* 발열(37.5℃이상) 확인, 출입자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, 음식섭취 자제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
  - 교육 참석자가 **방역수칙**을 철저히 **준수**하도록 **지도**,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(붙임2)\* 안내
    - \*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
  - 강의실 **공간**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  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붙임3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#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사전안내)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- (유증상자)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\*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 포함)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   \*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  -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)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(마스크 착용 등)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
  - 이후, 방역당국에 연락\*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
    - \*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, 지역번호 +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
- (확진환자)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·이행
  -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,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
- (교육생 출결 관리)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

# 3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(변경시항 없음)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\*
  - \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  - 심층 인터뷰\*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 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\*\* → 과태료 부과
    - \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    - \*\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# 4 시행시기

○ (시행시기) '21. 11. 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브이 1	코로나19	예
쿹띩ᅵᅵ	고노니()	М

|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

	사업정	(교육기	l관)	개요
--	-----	------	-----	----

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		
주 소	연 락 처	
대 표	근로자수(남/여)	명( / )

# □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

	항목	점검결과	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(필요시 별지 활용)
	1) 예방안전수칙(코로나 19 예방수칙) 안내문을 부착하였 는지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훈련   환경   및	2)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* 방역 상태	3)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4)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(두자리 띄어 앉기)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의심 증상 모니 터 등	1)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(37.5°C이상 여부) 모니터링 실시·기록(1일 2회 이상)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2)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3) 발열체크(1일 2회 이상)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1)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, 마스크 착용 준수, 손세정제 비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위생 청결 관리	2)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, 식사 시 대화 자제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3)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,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	4)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,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	□ 예 <mark>□ 아니오</mark>	

※ 점검결과 "아니오"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u> </u>	 <del> </del>	<u> </u>	
기타 애로사항			
및 건의사항			

2021

사업장명(교육기관) 명: 성 명 (인)

대 표 자 명: (인) 성 명

### 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-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 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"경계·심각"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 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  - (**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**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
-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  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
    - 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 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-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 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'의약외품'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.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
    - \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  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   - 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### 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# •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- 예외 대상 │ 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  - 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  -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
  -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지체별 미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
  - •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
  - •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  - •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  - •음식-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  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- 예외 상황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  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  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 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  - •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  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  - •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  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# 코로나19 의심환자\* 발생 시 행동 요령(예시)

\*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
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(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, 방문자 등)가 확인된 경우

1

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**마스크**를 **착용**시키고 다른 사람과 **격리 조치**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
 $\downarrow$ 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**1339**, **지역번호+120** 또는 **관할 보건소**로 상담

1

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**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및 **상호접촉 자제** 

 $\downarrow$ 

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, 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(방역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)

### [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\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검사 결과: 음성인 경우

검사 결과: 양성(확진)인 경우

₩

일상 복귀

●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(입원, 격리 등)에 협조·지원

② 사업장 내 상황 전파 (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, 방문자 등 포함)

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람의 경우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  - \*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에서는 **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**
- ②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③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
- ④ 사람과사람사이, 두 팔 간격 2m(최소 1m) 거리두기
- ⑤ 씻지않은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- 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
- 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·소독하기
- 8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이나호흡곤만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- ⑨ 매일 본인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
  - \*다양한 주요 증상 : 발열(37.5℃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 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 막힘 등
-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

질병관리청

2020,11,19

# 호흡71

### 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방문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\*특히 고위험군(영유아·고령자 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·식기류·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·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#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 🦊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

2021426





#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★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# "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"

실내

• 상시 마스크 착용



-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-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# 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- 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  - 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

- 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- ✓ 입과코를가릴수있는천·면마스크,일회용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